



#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위생용품소분업·리필판매업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8월 18일까지 의견 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공표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6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위생용품소분업 :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이 12월 시행('26.12.31.)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소분·리필 판매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규정하고, 영업자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준수사항 등을 마련하였다.

\* 위생용품 소분 대상 :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손가락·포크·ナイ프, 일회용 타월·행주 등 // 위생용품 리필판매 대상 : 세척제·헹굼보조제

또한 ▲회수 사실의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제품명, 제조일, 회수 사유·방법, 영업자 정보가 포함된 긴급회수문을 일간신문과 영업자 누리집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방법과 ▲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외에 전시회장,

지역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생산 실적 등 위생용품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생용품의 효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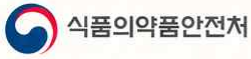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규 영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여 자원순환 정책 실현에 기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위생용품 산업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세척제·행금보조제 리필판매

담당 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강희 (043-719-1745)
		담당자	연구관	노지영 (043-719-1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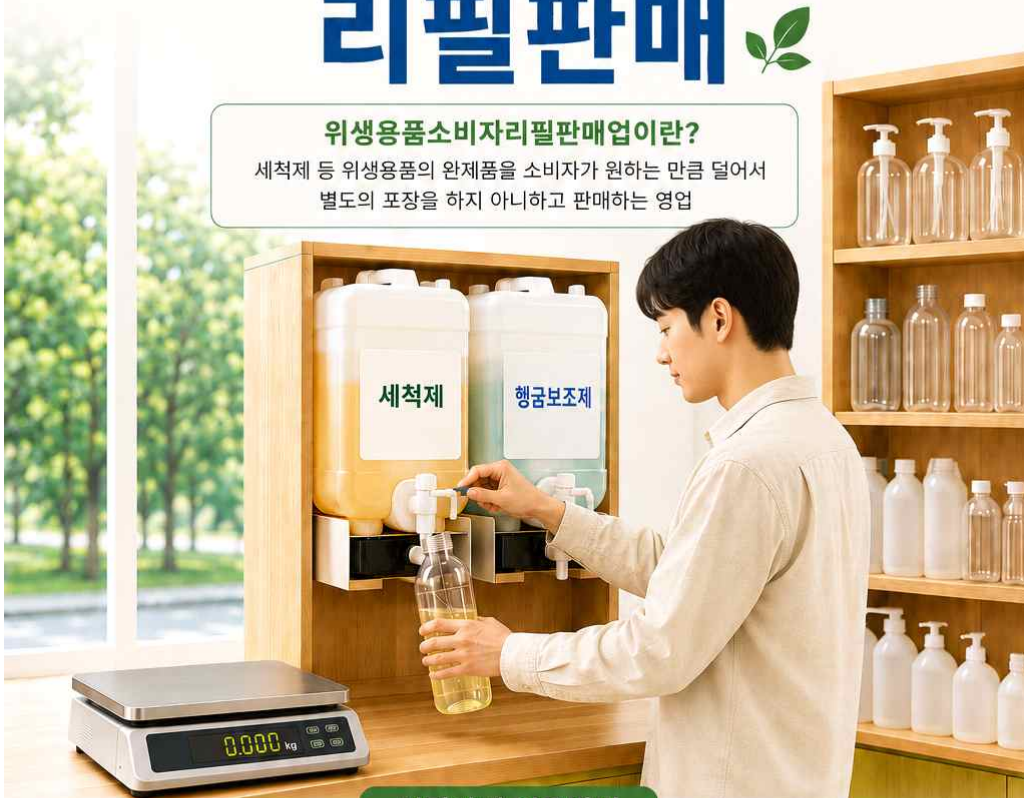


환경도 지키고, 안전은 더하고!

# 세척제 · 헹굼보조제 리필판매

##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란?

세척제 등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영업



### 리필판매 이용방법

1 용기 무게 측정



빈 용기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측정해요.

2 원하는 만큼 담기



세척제 또는 헹굼보조제를 원하는 만큼 담아요.

3 리필제품 무게 측정



담은 용기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다시 측정해요.

4 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및 판매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전하게 판매해요.

표시사항 예시	
<input type="checkbox"/>	세척제
<input type="checkbox"/>	제품명
<input type="checkbox"/>	제조일자
<input type="checkbox"/>	용량
<input type="checkbox"/>	...



안전한 리필판매



플라스틱 재사용



필요한 만큼 구매

※ 본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